



## 제2차 청년노동포럼

#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초단시간 노동을 중심으로-

**일시** 2021년 6월 21일(월) 오후 1시

**장소** 청년재단 강당 / 청년유니온 YOUTUBE 생중계

**주최**



청년유니온 부설 상담교육센터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YOUTH COMMUNITY UNION  
청년유니온



제2차 청년노동포럼

#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초단시간 노동을 중심으로-

---

일시 :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오후 1시

장소 : 청년재단 강당 / 청년유니온 YOUTUBE 생중계

청년유니온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0. 진행 식순 .....	03
1. <b>[발표1]</b> 청년유니온 2021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	05
2. <b>[발표2]</b>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및 제도 개선 방안 .....	19
3. <b>[발언1]</b> 이케아의 사례로 본 초단시간 노동실태 .....	25
4. <b>[발언2]</b>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현실과 생활비 실태 .....	29



<p>1:00 ~ 1:05</p>	<p><b>사회</b></p>	<p>제2차 청년노동포럼 취지 및 소개  <b>한지혜</b>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센터장</p>
<p>1:05 ~ 1:25</p>	<p><b>발표1</b></p>	<p>청년유니온 2021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발표  <b>이채은</b> 청년유니온 위원장</p>
<p>1:25 ~ 1:35</p>	<p><b>발표2</b></p>	<p>아르바이트 청년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 개선 방안  <b>김영민</b> 청년유니온 사무처장</p>
<p>1:35 ~ 1:40</p>	<p><b>발언1</b></p>	<p>이케아의 사례로 본 초단시간 노동실태  <b>함형재</b> 마트산업노동조합 조직국장</p>
<p>1:40 ~ 1:45</p>	<p><b>발언2</b></p>	<p>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현실과 생활비 실태  <b>신정웅</b>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위원장</p>
<p>1:45 ~ 1:55</p>	<p><b>질의 응답</b></p>	<p>현장 및 온라인 댓글 진행</p>
<p>1:55 ~ 2:00</p>	<p><b>마무리</b></p>	





# [발표1] 청년유니온 2021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발표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

## 1. 조사 개요

1) 대상 : 편의점, 카페, 음식점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

\* 29세 이하 노동자 중에 초단시간 노동자가 가장 많이 분포한 3개 업종

코드	산업	15-29세 (명)
561	음식점업	68,957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40,820
471	종합 소매업	25,161
855	일반 교습 학원	14,245
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2,807

29세 이하 초단시간 노동자 산업 분포  
(2019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에서 자체 분석)

2) 기간 : 2021년 5월 12일 ~ 6월 18일 (약 한 달 간)

3) 방법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네이버카페 등을 통한 홍보

4) 내용 : 근로조건, 추가 소득활동 유무 및 소득수준 등

5) 응답자 수 : 총 432명

## 2. 응답자 특성

- 성별 : 여성 80.3%, 남성 19.2%, 기타 0.5%

- 나이 : 평균 만 21.3세 (만 19세 이하 28.7%, 만 20~24세 59.0%, 만 25세 이상 12.3%)

- 지역 : 서울 11.8%, 경인지역 27.8%, 그 외 비수도권 60.4% (부산/울산/경남 17.1%, 대전/세종/충남/충북 13.4%, 대구/경북 12.7%, 광주/전남/전북 11.8%, 강원/제주 5.3%)

- 업종 : 편의점 39.8%, 음식점 34.7%, 카페 25.5%

### 3. 분석 방법

#### 1) 시간당 임금의 계산

-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근로조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다. 임금을 시급제로 받는 경우와 월급제로 받는 경우가 모두 존재하므로 월 단위로 받는 경우는 시간당 임금 계산이 필요하다.
-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였다.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유급주휴에 해당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하여 나누었다. 단 유급주휴는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보다 넘는 경우에도 8시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이 길면 최대 8시간을 더하는 걸로 환산했다.

$$\frac{W_{month}}{t + (t \geq 15) \times \min(8, \frac{t}{5})} \times \frac{48}{209}$$

#### 2) 최저임금 위반 여부

- 임금 지급 방식이 시급제인 경우, 2021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 월급제인 경우에는 답변한 주당 근로시간을 통해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마찬가지로 8,720원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 3)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최저임금에 비해서 훨씬 복잡하다. 답변에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위반, 해당없음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주당 근로시간	임금지급 형태	주휴수당 지급여부	시간당임금	
			10,475원 미만	10,475원 이상
주당 15시간 미만	월급제	(시급에 포함으로 간주)	해당없음	준수
		시급과 별도 계산	해당없음	
	시간제	시급에 포함		해당없음
		받지 않음		
주당 15시간 이상	월급제	(시급에 포함으로 간주)	위반	준수
		시급과 별도 계산	위반	
	시간제	시급에 포함		위반
		받지 않음		

- 우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주휴수당에 대한 법적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 주휴수당에 대한 법적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주당 15시간 이상 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질문 답변과 임금 지급 형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였다.
- 임금 지급 방식을 시간당 임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시급과 별도로 계산하여 받고 있다”고 답변하였거나, “시급에 포함하여 받고 있다”고 답변했고 시간당 임금이 10,475원(=8,720원×209시간÷174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는 주휴수당 준수로 보았다. 시급에 포함이라고 답하였으나 시간당 임금이 10,475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받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 위반으로 보았다.
- 월급제로 기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초단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환산한 시간당 임금이 10,475원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 위반으로 보았다.
- 예외적이기는 하나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임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다거나, 시급에 포함되어서 실제로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 4) 답변 방식에 따른 오차 문제

- 월 임금 금액은 만원 단위로 답변을 받았고, 응답자가 임의로 10만원 이하로 절사하여 입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였을 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주당 40시간 근로에 실제로는 월 183만원을 받고 있으나, 월 180만원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계산될 수 있다.
- 이러한 이유로 월급제에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위반 등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분석 결과의 전반적인 경향성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 응답자 중에서 월급제로 답한 경우는 16.4%에 불과하고, 업종별(편의점, 음식점, 카페)로 나누어도 월급제로 답한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 응답자 중에서 월급제와 시급제를 혼돈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가령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 임금을 만원 단위로 답변하도록 하였는데 8720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을 적은 것으로 보았다. 반대로 시간당 임금은 원 단위로 답변하도록 하였는데 20으로 답변한 경우가 있었다. 이는 월급 단위로 잘못 답변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 5) 2020년 조사와의 비교

- 청년유니온은 지난 2020년 5~6월에 동일한 대상으로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세부 문항을 제외하고는 조사 문항을 동일하게 설계하여 1년 사이에 변화를 엿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 표본을 추출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 조사 방식을 사용하였고, 조사방식의 변화와 표본 구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청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 2020년 조사에서는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현장 방문(183건)과 SNS 홍보를 통한 답변(477건)으로 답변을 받았고, 이번 조사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432건의 답변을 받았다. 2020년 조사에서 온라인 표본과 오프라인 표본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021년 조사		2020년 조사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합계	432	100.0	660	100.0
편의점	172	39.8	210	31.8
음식점	150	34.7	172	26.1
카페	110	25.5	277	42.0
여성	347	80.3	514	77.9
남성	83	19.2	137	20.8
기타	2	0.5	9	1.4
만18세 이하	53	12.3	14	2.1
만19~20세	155	35.9	205	31.1
만21~22세	113	26.2	185	28.0
만23~24세	58	13.4	115	17.4
만25~29세	38	8.8	116	17.6
만30~39세	15	3.5	24	3.6
서울	51	11.8	248	37.6
경기/인천	120	27.8	181	27.4
부산/울산/경남	74	17.1	73	11.1
대구/경북	55	12.7	26	3.9
대전/세종/충남/충북	58	13.4	78	11.8
광주/전남/전북	51	11.8	42	6.4
강원/제주	23	5.3	12	1.8
(수도권)	171	39.6	429	65.0
(비수도권)	261	60.4	231	35.0

- 표본 구성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편의점, 18세 이하, 비수도권(남부지방) 표본이 증가하였고, 카페, 20대 중후반, 서울지역의 표본이 감소하였다. 이를 감안하여 분석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 4. 근로조건 분석

### 1) 개괄

- 응답자의 평균적인 근로조건은 시급 8,985원에 주당 근로시간 19.1시간이었다. 정확히 최저임금 (8,720원)만 받는 비율이 48.6%에 달했고, 평균 월 임금 75.2만 원에 불과하였다.
  - \* 평균 주당 근로시간 19.1시간 (수도권 20시간, 비수도권 18.5시간)
  - \* 평균 시간당 임금 8,985원 (수도권 8,933원, 비수도권 9,019원)

### 2) 최저임금 준수 여부

- 주휴수당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한 최저임금 위반율은 27.8%로 나타났다. 업종별 위반율을 분석한 결과 편의점이 46.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카페 17.3%, 음식점 14% 순 이었다.
- 세부 집단별로도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경우가 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17.5%)에 비해서 비수도권 (34.5%)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가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산/울산/경남(36.5%), 대구/경북 (38.2%), 광주/전남/전북(45.1%)지역과 같은 남부 지역에서 최저임금 위반율이 타 지역 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작년 위반율인 11.7%와 비교해봤을 때 대폭 상승한 수치이다. 업종별로 보았을 때 카페는 5.8%에서 3배 가까이 상승했고 음식점 또한 6.4%에서 2배 이상 상승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낮은 수치이나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하여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 가장 위반율이 높아진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으로 13%p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빈도 (명)	비율 (%)	최저임금 위반율 (%)
편의점	172	39.8	46.5
음식점	150	34.7	14.0
카페	110	25.5	17.3
서울	51	11.8	15.7
경기/인천	120	27.8	18.3
부산/울산/경남	74	17.1	36.5
대구/경북	55	12.7	38.2
대전/세종/충남/충북	58	13.4	24.1
광주/전남/전북	51	11.8	45.1
강원/제주	23	5.3	21.7
(수도권)	171	39.6	17.5
(비수도권)	261	60.4	34.5

### 3) 초단시간 노동

- 초단시간으로 쪼개기 고용이 높은 수준임이 확인되었으며 작년과 비교해 보아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49.1%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10시간미만 일한다는 응답도 15.7%에 달했다.
- 이는 수도권(46.8%)과 비수도권(50.6%)을 가리지 않고 만연해있었으며, 여성(51.9%)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초단시간 노동의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 업종별로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초단시간 비율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카페(개인 영업 등), 편의점, 음식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 이들은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보장받지 못하여,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비해서 시간당 16.7%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 \* 전체 초단시간 노동 비율 49.1%
- \* 수도권 46.8%, 비수도권 50.6%
- \* 여성 51.9%, 남성 36.1%

	초단시간 비율 (%)
편의점	47.7
음식점	48.0
카페	52.7
초단시간 비율 (%)	
여성	51.9
남성	36.1
기타	-

	초단시간 비율 (%)
만18세 이하	52.8
만19~20세	54.2
만21~22세	52.2
만23~24세	41.4
만25~29세	34.2
만30~39세	26.7

### 4) 주휴수당 지급 실태

- 높은 초단시간 비율과 빈번한 주휴수당 위반으로 전체 응답자 중에서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14.1%에 불과하였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이 82.6%에 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49.1%에 달하는 높은 초단시간 노동의 비율이 한 몫하고 있다.
-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15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응답자로 대상을 좁히면, 그 중에서는 77.3%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편의점에서 88.9%, 비수도권에서는 81.4%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위반 비율을 보였다.
- 주휴수당 위반율은 77.3%로 절대적으로도 높은 수치이며 작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15%p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올해 편의점의 주휴수당 위반율은 88.9%로 작년과 비교해 18%p이상 상승하였다. 비수도권도 비슷한 상황으로 작년과 비교하여 11%p가까이 상승하였다.

## 5. 추가 소득 활동

### 1) 추가 소득 활동의 근로조건

- 전체 응답자의 21.5%가 추가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평균 월 소득 50.6만원,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12.3시간에 이르렀다. 이는 추가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평균 월 소득이 66.9만원임을 감안하면, 본업과 부업의 구분이 희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특히 초단시간일 경우 추가 소득활동이 있는 비율이 높아진다. 현재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추가 소득활동을 하는 비율이 27.4%로, 그렇지 않은 경우(15.9%)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초단시간으로 일할수록 부족한 소득을 더 벌기 위해서 다른 경제활동을 병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초단시간이 아니더라도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다른 추가적인 일자리를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진다.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에서는 17.5%, 3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11.1%만이 다른 일을 더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 작년에 비교 했을 때 올해 추가소득 활동의 비율과 시간은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초단시간의 경우 추가 활동의 비율이 8%p이상 증가하였다. 지역적으로도 작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추가소득 활동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비수도권이 8%p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빈도 (명)	평균 월 소득 (추가소득 포함)	평균 월 소득 (추가소득 제외)	평균 주당 근로시간	추가 소득활동		
					비율	평균 월 소득	평균 주당 근로시간
전체	432	86.1	75.2	19.1	21.5	-	-
추가 소득활동 없음	339	77.5	77.5	19.7	0.0	-	-
추가 소득활동 있음	93	117.5	66.9	16.7	100.0	50.6	12.3
초단시간인 경우	212	55.6	43.8	10.5	27.4	43.3	10.7
초단시간 아닌 경우	220	115.5	105.5	27.3	15.9	62.8	15.1

### 2) 추가 소득 활동 종류

- 추가 소득 활동의 종류는 다른 편의점, 카페, 음식점에서 초단시간으로 일하는 경우가 46.2%로 가장 높았으며, 비정기적인 아르바이트(23.7%)와 물류센터 등의 단순노무 일용직 아르바이트가(10.8%)로 뒤를 이어 나타났다. 기타 답변에는 근로장학생이나 사무직 등 다양한 답변이 있었다.

	빈도 (명)	비율 (%)	추가 소득활동	
			평균 월 소득	평균 주당 근로시간
편의점, 카페, 음식점에서 초단시간으로 일함	43	46.2	55.0	12.9
물류센터 등 단순노무 일용직 아르바이트	10	10.8	40.6	15.6
디자인, 영상 등 원격으로 가능한 일거리	3	3.2	-	-
음식배달 (쿠팡이츠, 배민커넥터 등)	2	2.2	-	-
기타 비정기적인 아르바이트	22	23.7	44.8	9.4
기타	13	14.0	55.6	13.6

- 쪼개기 고용으로 짧은 시간으로 밖에 일을 할 수 없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소득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추가 소득 활동조차 초단시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79.3% 이상으로 나타났다. 초단시간으로 두 가지 일을 하는 경우, 모두 주휴수당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임금 손실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 6. 기타의견

- 최저임금과 관련된 의견으로는 우선 쪼개기 고용이나,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의 준수실태와 관련된 문제인식이 높았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목소리도 다수 있었다. 특히 노동법 위반 신고 과정에 대한 보호 등의 요구가 많았다.
- 악화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라도 지켜줬으면 하는 요구가 지배적이었다. 이는 작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제법 나왔던 것과는 달랐다.
- 응답자에 대부분이 주휴수당 준수를 요구하지만, 전체 응답자 중 82.6%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한 위반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았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법 강화 요구가 많았다.
- 최저임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해고 또는 쪼개기 고용 증가, 일자리 감소와 인력 감소로 노동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하는 곳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안 챙겨주는 곳, 근로계약서 제대로 안 쓰는 곳 등 법을 잘 지킬 수 있게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고 주휴수당은 거의 받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쪼개기 알바를 무분별하게 뽑는 것에 대해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주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요.”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도 안 주는 곳이 있는데,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편의점 경력이 있는데도 수습기간을 적용해서 최저임금조차도 안 주려고 해요.”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보험료나 물가가 오르니까 실수령 금액이 높아지지 않아요.”

“지역을 더 조사해주세요. 지역에서 최저임금 받고 싶어요.”

“물가에 비해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최저임금으로 영화 한 편을 못 봐요.”

“편의점들이 최저임금을 잘 지키지 않아요.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급격히 올라가지 않으면서 상승되길 바랍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최저임금을 잘 받을 수 있게해주세요.”

“최저임금은 고용주가 노동을 제공한 사람에게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14시간 이하로 고용하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도 그렇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지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 파트타임을 딱 14시간씩 고용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편의점은 당연하게도 최저임금을 주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역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높은 것 같아요. 신고를 하면 돈을 받겠지만 소문이 돌아서 다른 곳에서 일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신고를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3개 하는데요. 그 중 2개 알바에서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 7. 나가며

- 이번 실태조사는 작년에 진행한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실태조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된 전국적인 실태조사다. 이번 실태 조사는 작년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의 추이를 비교할 수 있었다.
- 작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 비율은 대폭 상승하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최저임금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경영계의 주장과 배치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것도 확인 할 수 있다.
- 다만 코로나19의 영향도 고려해야 하나, 동결 수준에 가까운 1.5%라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하면, 별도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통해서 지급여력 문제를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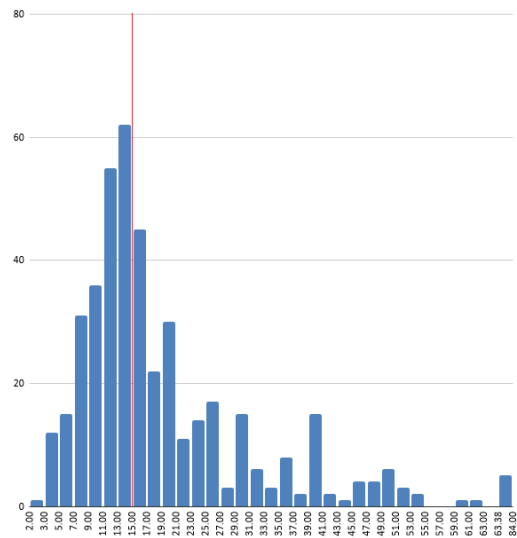
에서 논의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 등을 비롯한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

-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임금계산에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쪼개기 고용을 유발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여전히 높은 초단시간 고용 비율로서 확인된다.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초단시간 노동자가 156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15시간을 기준으로 인건비 부담이 30%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차이가 나는 제도적 허점이 이런 쪼개기 고용을 유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한 일자리가 절실하기 때문에 당장의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밖에 없는 게 청년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단시간 차별 해소가 절실하다.
- 또한 주휴수당 위반율은 77.8%에 달하는데 최저임금 위반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청년유니온이 2011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문화 되어 있던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문제를 제도의 영역으로 가져왔다. 10년이 지난 지금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주휴수당에 대한 인식은 널리 확산되어 있으나, 준수 실태는 이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 이러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되며,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초단시간 차별 해소 등 구조적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러한 현실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별첨) 청년유니온 2021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주휴수당 실태조사 결과 요약표

구분		빈도 (명)	비율 (%)	평균 주당 근로시간 (시간)	평균 시간당 임금 (원)
합계		432	100.0	19.1	8,985
업종	카페 (대형 프랜차이즈)	78	18.1	16.9	8,565
	카페 (개인 영업 등)	32	7.4	21.9	8,653
	편의점	172	39.8	20.2	8,670
	음식점	150	34.7	18.3	9,636
성별	여성	347	80.3	17.8	8,955
	남성	83	19.2	24.4	9,115
	기타	2	0.5	-	-
연령	만18세 이하	53	12.3	15.1	8,819
	만19~20세	155	35.9	16.9	9,398
	만21~22세	113	26.2	19.6	8,415
	만23~24세	58	13.4	20.1	9,040
	만25~29세	38	8.8	24.7	9,422
	만30~39세	15	3.5	-	-
지역	서울	51	11.8	19.8	9,429
	경기/인천	120	27.8	20.1	8,722
	부산/울산/경남	74	17.1	17.7	9,404
	대구/경북	55	12.7	20.1	9,306
	대전/세종/충남/충북	58	13.4	16.1	8,413
	광주/전남/전북	51	11.8	20.3	8,554
	강원/제주/기타	23	5.3	-	-
수도권	(수도권)	171	39.6	20.0	8,933
	(비수도권)	261	60.4	18.5	9,019

근로시간별 분포	빈도	비율
10시간 미만	68	15.7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145	33.5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68	15.7
20시간 이상 25시간 미만	54	12.5
2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20	4.6
30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24	5.5
3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10	2.3
40시간 이상 45시간 미만	18	4.2
45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8	1.8
50시간 이상	18	4.2



주당 근로시간 분포 (2시간 간격)

구분		최저임금 위반율 (%)	초단시간 노동 비중 (%)	주휴수당 지급 비율 (%)	주휴수당 미지급 비율 (%)	주휴수당 위반율 (%)
합계		27.8	49.1	14.1	82.6	39.4
업종	카페 (대형 프랜차이즈)	15.4	56.4	15.4	80.8	32.1
	카페 (개인 영업 등)	21.9	43.8	12.5	84.4	40.6
	편의점	46.5	47.7	8.7	88.4	46.5
	음식점	14.0	48.0	20.0	76.7	34.7
성별	여성	28.0	51.9	13.8	83.3	37.2
	남성	27.7	36.1	14.5	80.7	49.4
	기타	-	-	-	-	-
연령	만12~18세	11.3	52.8	13.2	79.2	32.1
	만19~20세	23.9	54.2	13.5	84.5	36.8
	만21~22세	32.7	52.2	12.4	85.0	36.3
	만23~24세	36.2	41.4	15.5	81.0	46.6
	만25~29세	34.2	34.2	15.8	81.6	52.6
	만30~39세	-	-	-	-	-
지역	서울	15.7	41.2	25.5	68.6	35.3
	경기/인천	18.3	49.2	11.7	85.0	39.2
	부산/울산/경남	36.5	51.4	10.8	85.1	40.5
	대구/경북	38.2	49.1	18.2	80.0	41.8
	대전/세종/충남/충북	24.1	56.9	13.8	84.5	29.3
	광주/전남/전북	45.1	41.2	13.7	82.4	49.0
	강원/제주/기타	-	-	-	-	-
수도권	(수도권)	17.5	46.8	15.8	80.1	38.0
	(비수도권)	34.5	50.6	13.0	84.0	40.2

(표본 수 30미만 집단 제외)

- \* 최저임금 위반율 : 시간당 임금(월급의 경우 유급주휴 적용하지 않고 환산)이 8,720원 미만인 비율
- \* 초단시간 노동 비중 : 주당 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경우의 비율
- \* 주휴수당 지급 비율 :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받거나(즉 시급이 10,480원 이상이거나), 시급과 별도로 지급받는 비율
- \* 주휴수당 미지급 비율 :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받지 않고 있는 경우와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답하였으나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이어서 실질적으로 받고 있지 못한 경우의 비율
- \* 주휴수당 위반율 : 주15시간 이상 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아야 함에도 미지급되고 있는 비율

## (별첨) 청년유니온 2021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 설문지

# 2021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에서는 2020년에 이어,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조사는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 ①, ②항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설문 내용은 연구의 목적 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습니다. 이 실태조사의 결과는 2020년 6월 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 설문 대상 : 편의점, 카페, 음식점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

■ 조사 기간 및 내용 : 6월 18일(금)까지 / 근로조건, 투잡 등

※ 이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자 :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02-735-0261 / yunion1030@gmail.com)

### 1.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적어주세요.

1) 현재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① 편의점    ② 카페(대형 프랜차이즈)    ③ 카페(개인 영업 등)    ④ 음식점

2) 시간당 임금 : \_\_\_\_\_ 원 (주휴수당:  시급에 포함,  시급과 별도로 지급,  받지 않음,  모름)  
또는 월 임금 : \_\_\_\_\_ 만원

3) 주당 근로시간 : \_\_\_\_\_ 시간

### 2. 추가로 하는 일(경제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소득을 얻기 위한 다른 활동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① 다른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 (문항 3으로)

② 편의점, 카페, 음식점에서 초단시간으로 일함    ③ 음식배달(쿠팡이츠, 배민커넥터 등)

④ 택배, 물류(쿠팡플렉스 등)

⑤ 물류센터 등 단순노무 일용직 아르바이트

⑥ 기타 비정기적인 아르바이트

⑦ 디자인, 영상 등 원격으로 가능한 일거리

⑧ 기타 (\_\_\_\_\_)

2) 부가적인 일을 통한 소득 활동의 월 평균 소득은? (단위: 만원) : \_\_\_\_\_ 만원

3) 지금 답변하신 1개의 사업장 외에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일주일에 평균 어느 정도 더 일하고 있나요? : \_\_\_\_\_ 시간

### 3.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4. 기초 정보입니다. 적어주신 정보는 분석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1) 출생년도 : \_\_\_\_\_ 년

2) 성별 :  여성,  남성,  \_\_\_\_\_

(청년유니온은 수많은 성 정체성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비워진 칸은 다양한 성별을 작성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3) 일하고 있는 지역 :

① 서울    ② 경기/인천    ③ 부산/울산/경남    ④ 광주/전남/전북    ⑤ 대구/경북    ⑥ 대전/세종/충남/충북    ⑦ 강원/제주



---

---

## [발표2] 아르바이트 청년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 개선 방안

---

---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 1. 최저임금 8,720원의 오늘

- 최저임금은 이제 만신창이가 된 지 오래다. 신임 여당 대표는 선거 참패 후,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만든 자리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사회적 관심은 커녕 골치 아픈 이슈를 피하듯 모두가 외면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 가깝다.
- 너무 하찮게 여겨지던 노동의 가치를 정상화하고, 불평등을 개선하자는 열망이 최저임금 인상에 집결되어 있었던 이전에 비하면 상전벽해와 같다. 대폭 인상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사회적 논쟁에 대한 대처와 보완 대책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탓이다.
- 마치 도박판과 같았던 가상자산 열풍과 주식투자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노동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이제는 허망하기도 하다. 최저임금 100원 올리는 것보다 비트코인 가격에 사회적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파이어족이나, 자산이 일하게 해야 한다는 방식의 담론 속에서 노동은 피해야 하는 무엇으로 전락해간다.
-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더욱 가속화되는 경제의 디지털화는 고용의 탈 노동을 부추긴다. 각종 사회보장제도 우회는 기본이고, 고용주의 책임도 면책된다.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만 늘어나는 일자리 양극화 속에서, 이러한 일자리마저 노동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노동을 중심으로 구축된 현대 산업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은 미조직 취약 노동 모두를 빠짐없이 포괄하는 최소한의 기준선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그 의미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이 단순히 매년 반복되는 줄다리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달라진 한국의 경제 규모와 위상, 유동성 증가 속에서 급격히 상승한 자산 가치, 그리고 확대되는 불평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가 지속하기 위한 노동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논의로 이어져야만 한다.

###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최저임금

- 백신 접종률이 1차 접종을 기준으로 어느새 30%에 육박하면서, 코로나19의 끝과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가 엇보인다. 이러한 낯새는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지난 2020년, 거리에 빈 점포들은 늘었지만, 도리어 상업용 부동산은 전년 대비 거래가 13% 증가하는 활황을 누렸다.<sup>1)</sup> 서울

변화가를 보아도, 상업용 건물을 개발하는 현장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적어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의 한파에 한 발 빗겨서 있다.

-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한국의 2021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6~4.3%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의 최고 수준이다. 이는 저성장이 심화되어 온 최근의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세계금융 위기의 충격 직후였던 2010년(6.5%) 이후 최대치일 가능성이 높다.
- 문제는 이러한 경제 회복의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이다. 이미 진행되어 있는 일자리의 양극화,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볼 때 K자 회복이라는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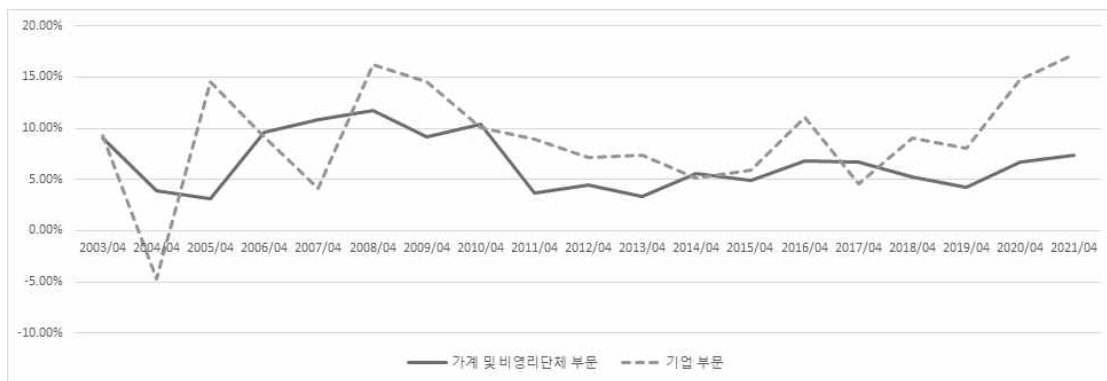
	과거 대형 경기침체						코로나 팬데믹
	부실기업 위기	1차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	외환위기	세계 금융위기	평균	
기간	1971. 4q~ 1972. 2q	1974. 4q~ 1975. 2q	1979. 4q~ 1980. 4q	1998. 1q~ 1998. 4q	2008. 4q~ 2009. 2q		2020. 2q
분산	37.1	10.1	48.8	31.2	14.6	28.4	63.8

자료: 한국은행 ECOS로부터 필자 계산.

주: 분산은 ECOS에 제시된 14개 업종 중 농림어업을 제외한 13개 비농림어업 부문 전년동기비 성장률의 해당기간 평균 값들로부터 구함.

\*출처: 강두용. 2020. “이번 위기는 다르다 - 코로나발(發) 경제위기의 특이성과 정책적 함의”

-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산업별 영향은 이전의 경기침체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불균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위기 이후에도 어떤 산업, 어떤 일자리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 대한 경험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에서 대대적인 경기 회복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이미 시중에 증가할 만큼 증가한 유동성은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 상승만 부추기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도 다르지 않은데, 특징적인 것은 그러한 수혜는 기업 부문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제주체별 보유 M2(광의의 통화량) 연간 증감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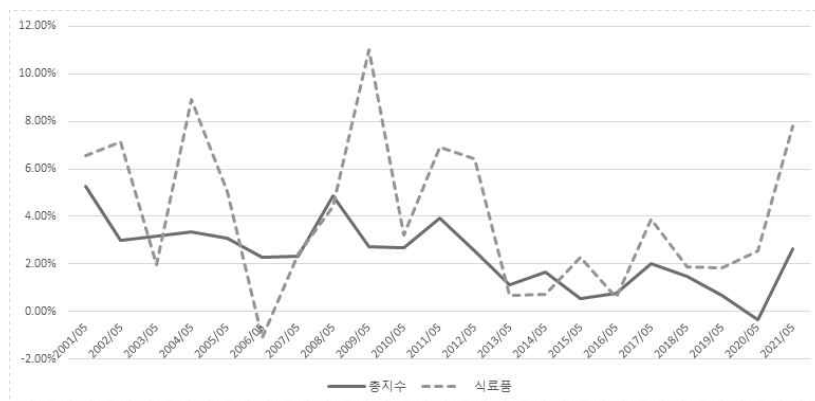
1)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1 KB 부동산 보고서 (상업용 편)>



- 특히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광의의 통화량(M2)의 경제 주체별 보유 비율 증감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2020년 1월)에는 기업 부문의 유동성 보유 비중은 27.1%였으나, 현재(2021년 4월) 29.4%로 급증했다. 반면에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문의 비중은 51.7%에서 48.9%로 급감하였다.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에 대한 비중이 기업 쪽으로 확연히 쏠리는 것이다. 저임금 노동의 확산으로 가계에는 경기 부양의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기업이 수혜를 독차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현재 논의되는 최저임금은 사실상 코로나19 이후에 적용되는 첫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본격화되기 시작한 코로나 양극화를 외면할 수 없다.
- 최저임금 인상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기존에 주로 이야기되던 평균임금 50%, 중위임금의 60% 또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기준선을 코로나19 이후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 전환과 저임금 노동의 보편화, 코로나19로 인한 탈 세계화 흐름 등은 이전의 기준은 무의미해지고 있다. 당장은 우선 코로나19 직후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 3.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2022년도 최저임금

- 당장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격차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소득의 상승에는 상응하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치솟는 물가보다는 높을 필요가 있다.
- 지난 달 한국은행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하는 1.7%를 기록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상향 조정했고, 이보다도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물가상승률도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년동월대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은 전년 동월대비 2.6%로, 2012년 3월 이후 최대를 기록하였다. 특

히 식료품 물가가 올해 상승폭이 6.8~10.2%를 기록하면서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본격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량 저조, 코로나19 속에서 농업 생산에 대한 타격 등으로 전 세계적인 애그플레이션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식료품은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지출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식료품 중심의 물가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 이러한 상황을 종합했을 때,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소 7% 수준을 기준으로 놓고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의 상황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2022년 초를 기준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 4.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향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 방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최저임금과 관련된 제도적 차별과 그로 인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이 보다 평등한 노동시장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첫 번째로 최저임금의 현재 가장 큰 제도적 허점은 앞서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살펴 본 쪼개기 고용 문제이다. 주당 근로시간 15시간을 기준으로 30%까지 달라지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쪼개기 고용의 유인이 매우 강한 상태이다. 이는 노동자에게는 짧은 근로시간으로 인해 소득도 낮아져 추가 소득활동을 강제하게 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사노무 관리의 비효율을 유발시킨다. 이는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정하여 15시간 미만에 적용 제외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현재 초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주휴수당 전면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분 대다수를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하여 고용감소 없이 제도적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최저임금 안에 포함되도록 기본급화를 추진으로 최저임금 제도의 단순화를 도모해야 한다.
- 두 번째로 매년 불필요한 논쟁을 반복하게 하는 구분적용 폐지이다. 최저임금이 처음 결정되었던 1988년, 1989년에만 업종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었으나, 그 이후에 전 업종 단일한 체계를 유지 중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서비스업이 다양화되고, 업종의 경계가 흐려지는 최근의 사회 변화에도 맞지 않다. 사용자 측에서 최저임금 협상 때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들고 나오지만, 최소한의 현실성도 논리도 갖추지 못한 채 소모적 논란만 야기하고 있다.
-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보다 열악한 노동자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이미 근로기준법의 대다수가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최저임금까지 더 낮게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더 취약한 일자리에 더 안 좋은 일자리라는 낙인효과만 부여할 뿐, 어떠한 순기능도 기대하기 어렵다.
- 오히려 비정규직이나 불안정 노동이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가 불공정하다. 불안한 고용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더 높은 보상을 강제하여, 기업

이 불안정 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용을 치르게 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호주 Casual Loading 사례와 같이 불안정 노동에 대해서는 가령 10% 더 높은 최저임금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 세 번째로 최저임금을 우회하는 방식의 고용형태 등장에 대한 대응이다. 이는 두 가지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최저임금의 울타리를 튼튼히 하는 것과 하나는 울타리 바깥에 최저임금에 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명백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것이나, 업·직종에 따른 표준단가 마련 노력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면서 아울러 결정 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구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익숙하고 또 지겨운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에서 일어나는 논쟁은 늘 비슷한 형태로 멈춰있고 사회와 단절되어 있다. 학계에서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만 있을 뿐,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나오는 주장들이 제대로 확인되고 논쟁되지 않는다. 지금의 폐쇄적인 논의 구조 자체의 개방성을 높이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최저임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 [발언1] 이케아의 사례로 본 초단시간 노동실태

함형재

마트산업노동조합 조직국장

## 1. 이케아코리아 단시간 근로 형태 및 비율

- 총 직원수 : 약 2,200명 (회사측 자료 미공개. 정부 공개자료 통한 추산치)
- 계약시간별 인원 비율

주당 계약 근로시간	16시간	20시간	25시간	28시간	32시간	40시간	계
조합원 비율	12.7%	24.1%	15.6%	7.8%	21.5%	18.3%	100.0%

\* 조합원 약 740여명(2021년 3월)을 대상으로 한 수치. 조합원 대다수는 코워커(사원) 직급이며, 관리자 직급은 주로 포괄임금제로 파악 (회사측 자료 미공개)

## 2. 생활에 턱없이 부족한 낮은 임금

- 오른쪽 급여명세서 : 주 16시간 노동자의 경우 기본급 76만원, 실수령액 약 70만원 사례 (회사의 임금 비공개 정책으로 인해 급여명세서 세부 내용은 비공개)
- 시급은 모든 직원이 평가(P&D)에 따라 다르게 인상되며, 현재 최저 9,200~9,300원 선 (2020년 기준, 2021년 임금은 교섭 중으로 미반영)

지급	단위	원	공제	원
기본급 근로계약 시간외 휴가 연차 퇴직금		760,000	건강보험료의 사원 부담 사원 고령연금 부담 사원 노년장기요양보험 사원 장기요양보험 연료조 사원 건강보험료 조정-최	60,000
(* ) 표시는 소급적용되는 내역 니다.				
지급합계:		760,000	공제합계:	60,000
추가과세소득			실지금액	700,000
			YEAR TO DATE	

### 3. 근무 스케줄의 문제

#### (1) 주 4~5일 쪼개기 근무

- 이케아코리아는 초단시간 노동자(주 16시간~)에게 1일 노동시간을 4, 5, 6, 8시간 등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 배치하며, 1주일에 4~5일 출근하는 경우도 발생.
- 2020년 2월 노동조합(마트산업노동조합 이케아코리아지회) 설립 이후, 2021년 3월 단체협약을 체결, <1일 최소 노동시간 6시간 보장>은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 중 하나였음.

#### (2) 불규칙한 1일 노동시간 및 출퇴근 시간

- 매일 노동시간이 다양해서 (4~8시간 등, 탄력근로제 사업장) 노동 강도가 갑작스레 높아지는 날이 발생.
- 주 32, 40시간 등 안정적으로 8시간을 일할 수 있는 노동자를 배치하고, 빠진 구멍을 메우는 식으로 단시간 스케줄 집어넣게 되면서, 근무시간대가 개점 준비시간부터 폐점 후 마무리 시간까지 폭이 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8:30-17:30	11:00-16:00		17:30-22:00		18:15-23:00
14	16:00-23:00		14:00-18:30	8:30-14:00		18:30-23:00
21	17:00-22:00	17:30-22:00	11:00-15:30	9:00-16:00		17:30-23:00
28	17:30-23:00		11:00-15:30			

	휴무	휴무	휴무	휴무	휴무	휴무
휴무	출근8:30 8:00노동	출근11:00 4:30노동	휴무	출근17:30 4:00노동	휴무	출근18:15 4:45노동
출근16:00 6:15노동	휴무	휴무	출근14:00 4:00노동	출근08:30 5:00노동	휴무	출근18:30 4:30노동
휴무	출근17:00 4:30노동	출근17:30 4:00노동	출근11:00 4:00노동	출근09:00 6:15노동	휴무	출근17:30 5:30노동
출근17:30 5:00노동	휴무	출근11:00 4:00노동	월간 총 노동시간 72시간 45분 30일 중 출근일수 15일, 일평균 4시간 51분			

### (3) 워라벨을 찾기 어려운 단시간 노동

- 스케줄이 2달 단위로 나오기는 하지만 출근일자(요일), 출근 시간, 1일 노동시간 등 모두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른 일(투잡)을 하거나, 학원 수강 등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 등을 하기에 어려움.

### (4) 주말 고정 스케줄의 함정

- 주 16시간의 경우 주말(토,일)에만 출근하는 경우도 있음. 평일 다른 생활(학업, 투잡 등)을 하기에 유리할 수 있으나, 현재 이케아코리아는 평일 대비 주말 노동강도 매우 높은 사업장으로, 방문고객수는 2배가 넘으나, 출근하는 직원수, 근로시간은 그에 못 미침.

(※ 평일, 주말 방문 고객수는 이케아코리아가 부당노동행위 건으로 2021년 초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름)

## 4. 이마저도 계약직으로 뽑는 현실

- 높은 노동강도, 열악한 급여 등으로 퇴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케아코리아는 주로 계약직으로 이 자리를 채우고 있음
- 이케아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의 '채용정보'에서 '대한민국'으로 검색시 15건 조회. 이 중 한글로 된 8건의 채용공고 모두 계약직 (3~12개월)

### 채용공고 15개

표시하는 중 결과 1-10

정렬: 직함 마감일 게시 날짜



#### 이케아 푸드 코워커 (주 32시간) - 동부산점 (6개월) (상시채용)

Dongbusan

• 도움이 필요한 고객에게 다가가 고객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알맞은 제품을 제안하고 더 나아가 제품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어울리는 제품을 추천하여 고객을 만족시킵니다. • 이케아의 다양한 판매 방식 및 커뮤니케이션 사용 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고객에 맞춰 고객 응대 노하우를 활용합니다. • 이케아 매장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고객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음식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재료, 기원 및 기타 이점을 적극 알아봅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을 고객 및...

더 보기



#### 이케아 푸드 코워커 (주 16시간) - 동부산점 (6개월, 주말근무) (상시채용)

Dongbusan

• 도움이 필요한 고객에게 다가가 고객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알맞은 제품을 제안하고 더 나아가 제품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어울리는 제품을 추천하여 고객을 만족시킵니다. • 이케아의 다양한 판매 방식 및 커뮤니케이션 사용 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고객에 맞춰 고객 응대 노하우를 활용합니다. • 이케아 매장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고객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음식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재료, 기원 및 기타 이점을 적극 알아봅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을 고객 및...

더 보기

## 5. 결론

- 이케아코리아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부품처럼 그때 그때 끼워서 노동력을 착취해서 쓰고 버리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결코 지속하기 어려운 나쁜 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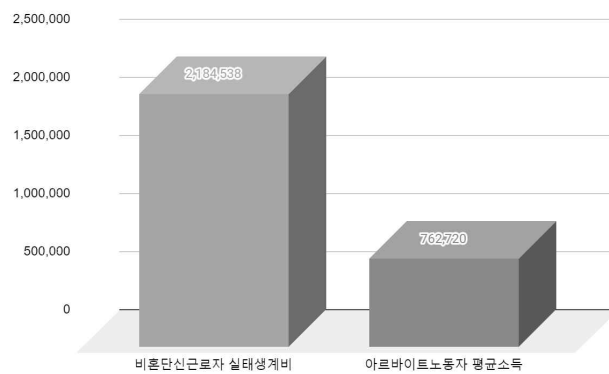
## [발언2]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현실과 생활비 실태

- 만 34세 미만 단시간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3월 생계비 결과분석 -

신정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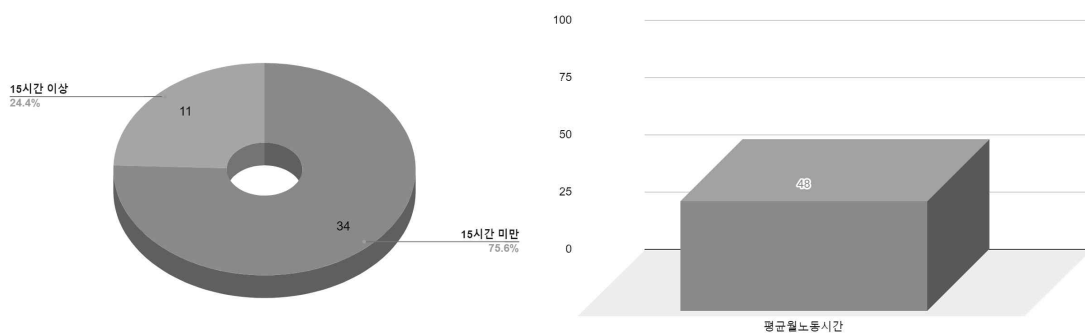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위원장

### 1. 월 평균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분석 : 762,720원



- 생계비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76만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2019년 ‘비혼 단신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 2,184,538만원의 1/3 정도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이들의 소득이 1/3 에도 못 미치는 이유에 대한 대답으로는 적은 노동시간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많은 수를 차지한 15시간 미만 초단시간노동자는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 제외되어 소득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두가지 이상 사업장에서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는 7명입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지급 받는 노동자는 37명이었고 평균 금액은 503,815원이었습니다. 또한 이들 중에는 계약이 종료되어 다음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 또한 많았습니다.

### 2. 월 평균 노동시간과 노동형태



- 분석에 따르면 단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 45명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11명(24.4%)에 불과하며, 나머지 34명(75.4%)은 주 15시간 이하로 일을 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노동시간은 4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월 60시간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3. 고정지출 분석

구분	2019년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		2021년 단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 3월 생계비	
	생계비 (소비지출+비소비지출)	2,184,538	100%	873,409
<b>고정비 지출</b>	<b>772,268</b>	<b>35.3%</b>	<b>543,016</b>	<b>62.2%</b>
주거/수도/광열	444,486	20.3%	351,620	40.3%
교통	252,461	11.6%	125,070	14.3%
통신	75,321	3.4%	66,326	7.6%

- 최저임금위원회 산하 생계비전문위원회 2020년도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218만원입니다. 그중 가계부 찰린지 고정지출에 해당하는 주거/수도/광열 444,486원(20.3%), 교통 252,461원(11.6%), 통신 75,321원(3.4%)으로 총금액 772,268원(35.3%)입니다. 이는 실태생계비의 1/3에 해당합니다. 반면 단시간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가계부를 보면 주거/수도/광열 351,620원(40.3%), 교통 125,070원(14.3%), 통신 66,326원(7.6%)으로 총금액 543,016원(62.2%)입니다.

구분	2019년 비혼단신근로자 소득분위 2분위 생계비		2021년 아르바이트 저임금 노동자 3월 생계비	
	생계비	1,368,244	100%	873,409
<b>고정비지출</b>	<b>491,515</b>	<b>35.9%</b>	<b>543,016</b>	<b>62.2%</b>
주거/수도/광열	351,586	25.7%	351,620	40.3%
교통	84,932	6.2%	125,070	14.3%
통신	54,997	4%	66,326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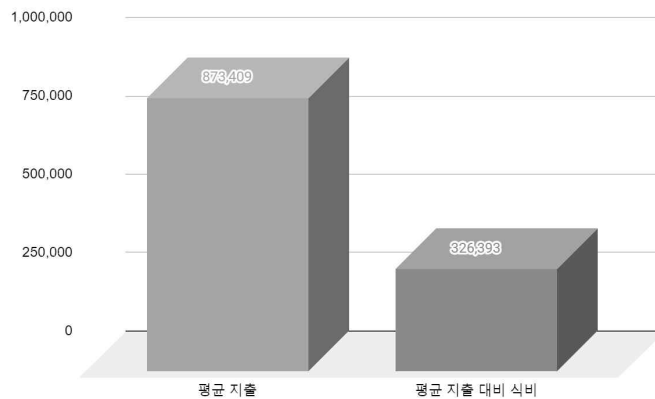
- 이는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평균보다 27%나 높은 결과로 월 평균 생계비의 60% 이상이 고정지출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위 분석보고서 근로소득 기준 2분위의 주거/수도/광열 35만원(25.7%), 교통 8만5천원(6.2%), 통신 5만5천원(4%) 총 49만원(35.9%)과 비슷합니다. 근로소득 기준 2분위의 생계비는 130만원으로 단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2분위의 평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지출은 비슷하여 생계에 큰 부담을 미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 참가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월 생계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서 2, 3인이 함께 생활하는 자구책을 마련하는가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독립을 주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과 같은 저금리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싶어도 본인 부담 비용이 당장 없어서 3-500만원 보증금의 3-50만원 정

도의 월세를 이용하는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 교통비 또한 소득의 15% 정도가 평균적으로 지출되며 물가 인상 중에서도 교통비 인상 등이 아르바이트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그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4. 식비 지출 분석

- 이번 조사에 응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식비는 326,393원입니다. 이는 참여자들의 월 평균 지출 금액 873,409원의 37%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를 하루 평균 식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879원, 한끼 평균 3,626원 입니다.



- 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김치찌개 백반 평균 가격 6,769원, 자장면 평균가격 5,346원에 절반 수준입니다. 이 금액으로 식사를 해결할 경우 김밥이나 편의점 간편식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먹을 때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조사 인원을 면담한 결과 음식점 이용에 부담을 느끼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금액을 줄였습니다. 응답자 중에 백반집보다 김밥 등 분식을 방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적은 수준의 소득에 맞추어 저렴한 음식만을 골라서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월 평균소득 76만 2천원 이상 21명의 평균 식비는 41만원으로 평균소득 이하 24명의 평균식비 25만원보다 16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지출액의 37%가 식비에 쓰이는 것으로 봤을 때 소득이 오를수록 식비 지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이익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이익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내수 경제의 활성화, 상생 경제를 만들어 내는 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럼에도 지금의 열악한 소득 현실은 식비 부담을 가져와 청년 알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돈 없어 끼니 굶는 경우가 30% 육박’*

*‘식비부터 줄여야하는 청년 알바노동자 현실’*

*‘알바노동자 한 끼 평균 3,626원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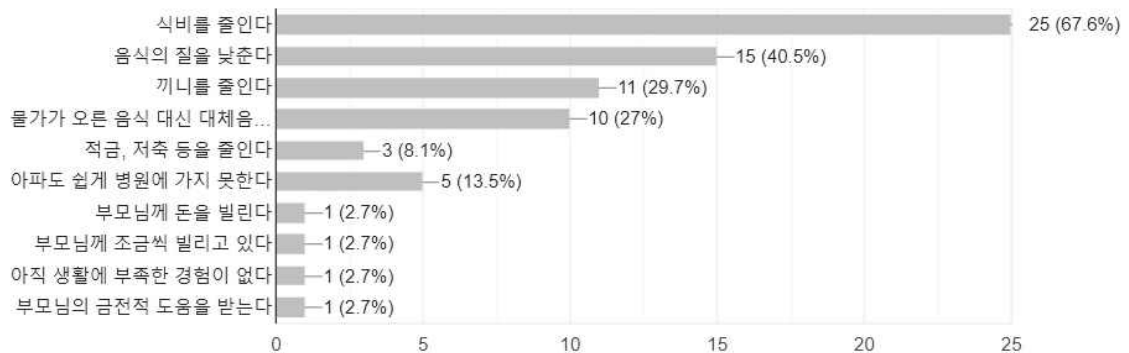
*‘알바노동자 건강이 위협 하다’*

- 알바노조 심층 인터뷰 결과 한 달 수입이 부족한 경우 '식비를 줄인다'가 67.6%로 가장 많았고, '음식의 질을 낮춘다' 40.5%, '끼니를 줄인다' 29.7%, '물가가 오른 음식 대신 대체음식을 먹는다' 27%, '아파도 쉽게 병원에 가지 못한다' 13.5%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복수응답)

- 청년 알바노동자들은 저임금노동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식비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한달 수입이 부족한 경우 대처 방법은?

응답 37개



- 심층인터뷰 결과 중 알바노동자의 한 달 평균 식비가 326,393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 끼 평균 식비는 3,626원입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컵라면 등으로 대충 때우거나 김밥을 싸게 대량주문해서 하나씩 먹거나 끼니를 건너뛰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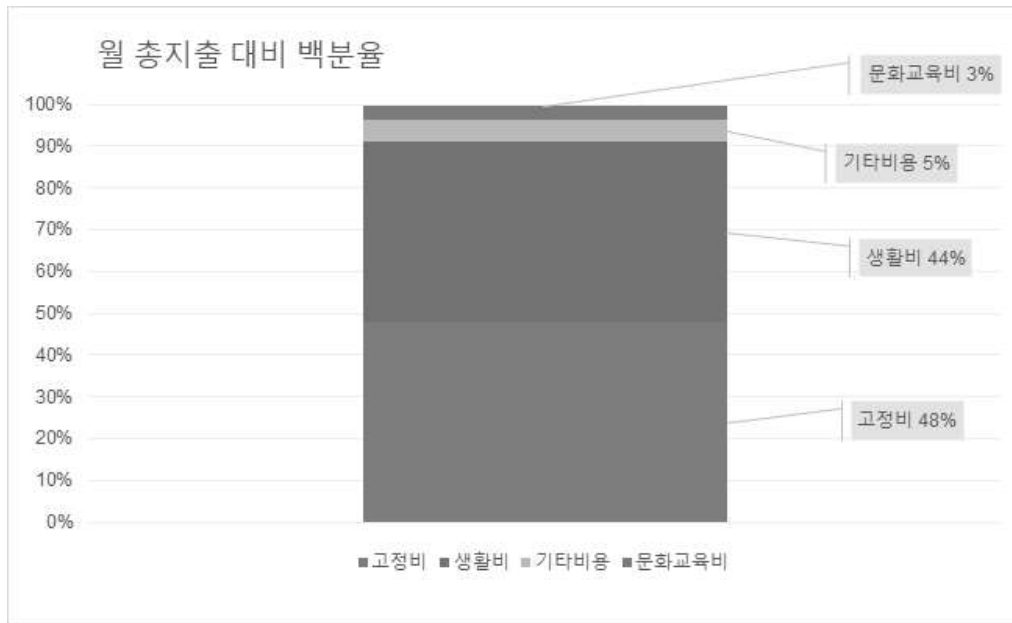
- 이런 상황은 단순히 안타까운 청년의 현실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 노동자 건강권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 20대 청년 아침식사 결식률이 50%에 육박하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끼니를 굶는 경우 복부비만, 고혈압, 혈당장애 등의 대사증후군이 나타날 위험성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흡연율, 음주율, 우울 의심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1인 가구 청년이 건강위험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심리적 건강이 취약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2018국민건강영양조사, 2018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

- 청년 1인 가구는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소득 및 고용 불안정성이 높습니다. 청년층은 저임금 노동, 고용 불안정, 학자금 대출 상황, 취업 준비, 집값 상승 등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대부분이 생활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확산이 청년들의 건강권까지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 5. 문화 및 교육비 지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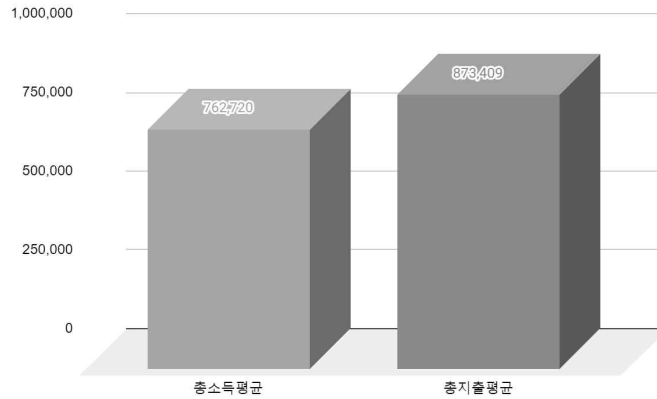
- 문화 및 교육비 영역에서의 지출은 생활에 필수적인 영역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 및 교육비 지출은 평균 29,000원(3%)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영화 및 공연관람, 학원 및 교재구입비, 운동 및 취미생활에 따른 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다른 지출 비용에 비해 지출 금액이 현저히 낮습니다. 더욱이 이 중 지출 금액이 1%도 채 되지 않은 인원은 21명이며 21명 중 17명은 지출 금액이 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와 같이 청년 노동자들이 문화 및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거의 없다는 것은 낮은 소득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비와 교통비, 식비같이 필수적인 고정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92%가 넘는 상황에서 여가 시간에 비용을 사용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 주목할 부분은 45명의 전체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17명의 응답자들이 문화 및 교육비 지출총액이 0원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문화생활의 향유나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의 문제를 넘어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응답자들 중 일부와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취합된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청년노동자들이 문화 및 교육의 영역을 어떻게 여기는지, 각자의 삶과 생활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나름의 고민과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응답자들의 인터뷰 중 공통된 답변은 '지금의 생활이 빠듯하고,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비단 마음의 여유를 넘어 실제 청년들에게 필요한 시간과 비용 모두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한 '청년 삶의 질 제고방안 연구'에 따르면, "시간 활용의 측면에서 노동시간 감소는 여가 활동에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의 생활을 '감당'하고 '버티는'것을 넘어 이후의 삶을 계획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여유시간 확보를 위한 노동시간의 감소,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이어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이 오늘에 머무르지 않고 내일을 그릴 수 있도록, 실질적

인 고민과 정책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 6. 총 소득 대비 총 지출 분석



- 만 34세 이하 알바노동자들의 평균 총수입은 762,720원이며, 평균 총 지출은 873,409원으로 월 평균 110,689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 세부 지출을 보면 주거비, 교통통신비를 포함한 고정비가 48%, 식비와 생필품 등을 포함한 생활비가 44% 기타비용 5%로 나타났습니다. 고정지출의 금액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생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에 참여한 한 응답자는 적자로 살지 않기 위해 소득 수준에 자신을 맞춰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는 “저에게 가장 부담되는 지출항목은 고정비인데요, 제 지출의 42%가 월세와 공과금, 교통, 통신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황을 끝내지 못했다면 아마 더 높았을 것입니다. 독립을 하고 나서 주거비가 생기자 보니 고정 지출이 크게 늘어 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지하철 정기권, 알뜰 교통카드를 비롯해서 정부지원을 통해 주거비와 공과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도 많습니다”라고 자신의 소회를 들려줬습니다.
- 조사에 참여한 청년 노동자들의 실태생계비가 월 소득의 10만원 이상을 상회하는 현실은 그만큼의 보전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자체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게 함’에 있습니다. 실태생계비만큼은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유니온 부설 상담교육센터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YOUTH COMMUNITY UNION  
**청년유니온**